

○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(포괄계약)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| 구 분 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 고 |
|----------|---|--|---|
| 약관, 약정서명 |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 (구 하나은행) |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(포괄계약) | 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전산통합에 따라 통합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명에 (구 하나은행) 명칭 삭제 |
| 세부 내용변경 | <p>제 6 조 (담보가치의 유지) 대상채권에 대하여 판매기업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사고, 사변,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물품등의 하자, 불량 등이 발생하여 은행이 대상채권 대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고, 부족금액에 관하여는 은행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 | <p>제 6 조 (담보가치의 유지)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·납품의 불합격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 2 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,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 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.</p> |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제한(공정위 및 금감원의 변경권고 반영) |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

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